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작성 지침**   |  |  | | --- | --- | | **목적** | 본 감사조서는 관련 KPMG Audit Execution Guide (KAEG) 요구사항 및 지침에 따라 감사팀이 감사 계획부터 감사 완료단계까지 Specific team member 및 KPMG가 고용한 Specialist의 참여에 대한 고려 및 문서화를 수행하도록 돕는다. 본 감사조서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, 감사팀은 적절한 시기에 각 섹션을 별도로 sign-off하고 개별 KPMG Clara workflow (KCw) screen에 각각 첨부한다.  본 감사조서에서 Specific team member는 ‘STM’으로, KPMG가 고용한 Specialist는 ‘KPMG Specialist’로 간결하게 표시한다.   * Section 1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팀이 STM 및 KPMG Specialist의 참여를 계획하도록 돕는다.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참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고 해당 감사인의 업무의 성격, 범위 및 목적을 판단한다 *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STM 또는 KPMG Specialist와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문서화한다   +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책임 (수행하는 업무의 목적 및 성격 포함)   + STM 또는 KPMG Specialist와 감사팀의 각 역할과 책임   +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제공할 책임   + STM 또는 KPMG Specialist와 감사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, 시기 및 범위 *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고지한다   본 섹션은 감사팀이 STM 또는 KPMG Specialist와 협력해서 작성해야 하며 모든 관계자가 합의해야 한다. KCw의 관련 Specialist module에 포함된 Understanding 탭 (1.Engagement management > 1.Audit planning > SP. Specialist > 1. Understanding) 에 해당 섹션을 첨부한다.  Section 2 (‘STM또는 KPMG Specialist의 발견사항 및 결론’)는 Alex 또는 KCw contextual guidance에서 찾을 수 있다. | | **적용** | 본 감사조서는 Valuation, Tax, Actuary 및 IRM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STM 및 KPMG Specialist를 위하여 개발되었다. 조서에 등장하는 사례는 감사인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, 특정 유형의 STM 또는 KPMG Specialist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 본 조서의 목적을 충족하고 본 조서에서 다뤄진 모든 항목을 KCw screen에서 직접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서를 사용해서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감사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문서화해야 한다. 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단순히 자문 (Consultation) 목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 감사조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| |

**Tax specialist의 경우,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, 해당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별도의 지정된 professional이 Tax specialist로 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Specific team member 또는 KPMG Specialist Sign-off**   1. 본인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Specific team member 또는 KPMG Specialist로서의 역할,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 평가 및 계획된 감사접근방법을 이해하고 본 감사조서의 현 섹션에서 기술하는 참여의 성격, 범위 및 시기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. 2. 본인은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. 3. 본인은 감사팀의 일원으로서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KAEG-I, ISA 200.14-15 | Comply with independence requirements 또는 KAEG-P (INTL), AS 1005.01-07 | Comply with independence requirements 가 요구하는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고 있고, 독립성을 포함한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KPMG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감사파트너에게 알릴 것입니다. | |
| **서명 및 서명일:** |  | |
| **STM 또는 KPMG specialist 이름[[1]](#footnote-1):** |  | |
| **STM 또는 KPMG specialist 유형 (예: Valuation, Tax, Actuary, IRM):** | Valuation | |

**Engagement partner**

본인은 Specific team member 또는 KPMG Specialist와 감사 팀 내에서 그들의 역할,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요왜곡표시위험 평가 및 계획된 감사접근방법을 논의하고 본 감사조서의 현 섹션에서 기술하는 참여의 성격, 범위 및 시기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서명 및 서명일:** |  |
| **Engagement partner 이름:** | 강인혜 |

|  |
| --- |
| 감사 업무에 배정된 STM 및 KPMG Specialist는 감사팀의 일원이므로, 가능한 이른 시기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업무 전반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.  **Part 1 – 감사계획 협의 및 STM 또는 KPMG Specialist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** |
| 다음과 같은 항목이 논의될 수 있다:   1. **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업무와 연관된 기업 관련 정보**  |  |  | | --- | --- | | 대상 기업 및 기업 환경 | 회사는 TFT-LCD 및 OLED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,  Display CGU, Display (AD PO) CGU 및 조명 CGU 3개의 CGU로 구성되어 있으며, Display CGU와 Display (AD PO) CGU가 금액적으로 중요함.   * 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보고서를 수령하여 적정성 검토 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며, 손상과 관련하여 전기 대비 변동된 시스템 변경 등은 검토 결과 없음 | |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참여와 관련하여 식별된 중요 왜곡표시위험 및 관련 유의적인 계정 및 공시 | 유형자산(V), 무형자산(V)  236.2.02  회수가능액 측정 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부적절하게 추정됨. | |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참여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결합평가위험 (CAR) 평가 | SC(고유위험 : Significant / 통제 : Control Reliance) | |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, 해당 추정치를 도출하는데 사용된 방법 (및 모형)을 기술한다 | 현금흐름할인모형(Discounted Free Cash Flow Model) 사용 | |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, 해당 추정치의 근거가 되는 기초 가정 및 관련 가정을 기술한다[[2]](#footnote-2) | 추정 매출액, 영업비용, 판관비, 자본적지출, 운전자본 및 CGU의 분류, 할인율, 영구성장률 등 valuation 관련 사항들 | |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, 해당 추정치를 도출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기술한다 | * 중장기사업계획(투자) * 중장기사업계획(손익) * 비교대상장부가액 | |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해, 해당 추정치를 감사하기 위해 계획된 감사접근방법을 기술한다 | *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는 방법과 기초가 되는 데이터에 대한 검토 * 경영진이 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 * 감사보고서일 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는지 결정 * 적절한 입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에 대한통제의 운영 효과성 테스트 |  1. **중요성과 왜곡표시 기준**  |  |  | | --- | --- | | 중요성(Materiality) :  *[별도 : 74,000백만원 / 연결 : 92,000백만원]*  수행중요성(Performance materiality) :  *[별도 : 55,500백만원 / 연결 : 69,000백만원]*  Audit misstatements posting threshold (AMPT): *[별도 : 3,700백만원 / 연결 : 4,600백만원]* | * 수행중요성 금액은 STM 또는 KPMG Specialist를 포함한 감사팀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해당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설계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. 해당 금액은 계정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나타내고,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발견사항 및 결론에 포함될 사항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. * AMPT 금액은 STM 및 KPMG Specialist를 포함한 감사팀이 감사업무 수행 중 해당금액보다 큰 오류 또는 누락사항을 식별한 경우 KCw의 감사 왜곡표시 집계표에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. 따라서, 이러한 사항은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발견사항 및 결론에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한다. |  1. **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업무에 대한 이해**  |  |  | | --- | --- | | STM 또는 KPMG Specialist 참여의 전반적인 목적 |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평가 | | 다음 사항을 통해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지식, 기술 및 경험에 대해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STM 또는 KPMG Specialist 참여의 성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다.   * STM 또는 KPMG Specialist와의 논의 * ***Knowledge, Skill and Ability Work Paper*** | **KPMG specialist 참여의 성격이 적절한지 여부.**   * Valuation specialist는 전기에도 LG디스플레이 감사참여 경험이 있는 바,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section 2 를 통해 감사업무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확인함. | |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감사에 참여하는 첫 해가 아닌 경우, 전기 감사에서 STM 또는 KPMG Specialist 참여의 범위, 성격 및 시기를 검토하고 감사 참여의 효과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고려한다 | Valuation specialist 참여의 범위, 성격 및 시기는 전기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임. | |
| 1. **적용 재무보고체계**  |  |  | | --- | --- | | 적용 재무보고체계 | IFRS / K-IFRS | | STM 또는 KPMG Specialist 참여의 성격 측면에서,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 재무보고기준 또는 기타 기준에서의 요구사항이 있는지, 그리고 STM 또는 KPMG Specialist 가 그것들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한다 |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의 요소를 반영한다.   1.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.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 3. 현행 시장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4. 자산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상하는 가격 5.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   Valuation specialist 는 교육 및 전기 감사 경험을 통하여 상기 재무보고기준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였음. | |
| 1. **STM 또는 KPMG Specialist와 관련된 기타 사항**  |  | | --- | | 해당사항 없음. | |

**Part 2 – STM 또는 KPMG Specialist와 기타 감사 팀원의 개별적인 역할 및 책임**

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및 기타 정보에 대한 목록을 도출하고 해당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관련성 및 신뢰성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요청하는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목록** | **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테스트할 책임** |
| * 향후 사업계획 * 최근 재무제표 *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* 설비투자계획 * 과거 5개년도 실적, 연평균 매출성장률 * 사업전망 자료 * 할인율, 현금흐름 추정 사용 가정 | *제공된 정보의 완전성, 정확성 테스트는 감사팀의 역할* |
| **절차의 성격, 범위 및 시기** | **담당자** |
| **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회계추정치의 추정치 요소 (방법, 관련 가정 및 데이터)를 테스트 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의 정도**   * 향후 매출액 및 영업비용 가정의 적정성 검토(Audit led with KPMG Specialist Support) * 운전자본 및 자본적지출 가정의 적정성 검토(Audit led with KPMG Specialist Support) * 할인율 및 영구성장율 가정의 적정성 검토(KPMG Specialist Led with Audit support) | *Valuation Specialist 서무성* |
| **위에서 식별된 추정치 요소에 대한 절차 등,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수행하려 하는 절차**   * 적용한 평가방법론의 적정성 검토 *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(할인율, 영구성장률, 매출액, 매출원가, 판관비, 자본적지출 및 유무형자산 감가비, 운전자본 등) 검토 * 할인율 산출 계산 정확성 검토 | *Valuation Specialist 서무성* |
| **STM 또는 KPMG Specialist 참여하는 특정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 팀원이 수행하려 하는 절차**   * 적용한 회계정책에 대한 판단 * 회사가 활용한 내부 또는 외부평가전문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판단 * Client가 내부 또는 외부평가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기초정보에 대한 정확성 검증 * 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 계정잔액 검증 *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효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* 공시사항의 완전성 검증 * 공시된 금액적 정보에 대한 검토 | *ICE1 장지선* |

|  |
| --- |
| **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제공할 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강조** |
| * 부정적인 확신으로 표현되지 않은 한정된 용어 또는 상충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명확한 서면 결론의 형성 * KPMG specialist는 KAEG에 따라 참여한 각 분야에 대해 수행된 절차와 도달된 결론을 입증하는 충분한 감사증거를 감사팀에 제공할 책임이 있음 * 감사팀은 KPMG specialist에 의해 작성 또는 검토된 모든 감사조서에 대해 리뷰해야 하며, 해당 audit procedure에 specialist 로부터 입수한 관련 모든 감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* 담당(감사)파트너가 계획된 감사방법 또는 감사의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 |

**수행 업무 및 일정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수행 업무** | **계획된 일자** |
| 예상 감사보고서일 | 2023년 3월 3일 |
| Kick-off meeting | 2023년 1월 2일 |
| * 대상 기업 경영진; |  |
| * 감사팀 |  |
| * 제 3자 |  |
| RAPD (Risk assessment and planning discussion) | 2022년 7월 29일 |
| STM 또는 KPMG Specialist 및 감사 팀원 간의 업무 할당에 대한 합의 및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유의적인 발견사항을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대한 합의 | 2022년 11월 30일 |
|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수행할 절차의 완료 기한 | 2023년 1월 31일 |
|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식별한 유의적인 발견사항에 대한 논의 | 2023년 1월 20일 |
|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발견사항 및 결론이 포함된 본 감사조서 섹션 2에 대한 제공 (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요약과 작성 및 검토 완료된 감사조서에 대한 참조 포함) | 2023년 2월 14일 |
| KAEG-I, ISA 230.13-16 | Assemble the final set of audit documentation and document the audit file assembly date 또는 KAEG-P (INTL), AS 1215.14-21 | Assemble the final set of audit documentation에 따라 STM 또는 KPMG Specialist 업무와 관련된 모든 감사조서에 대한 마감 기한 | 2023년 3월 17일 |

1. 각 유형 (예: Valuation, Actuary, Tax)에 대하여 STM 또는 KPMG Specialist로 감사팀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인 경우, 감사에 참여하는 STM 또는 KPMG Specialist의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STM 또는 KPMG Specialist가 본 감사조서에 대한 sign-off를 수행한다. [↑](#footnote-ref-1)
2. KAEG-I, ISA 540 | Identify which assumptions are relevant to an accounting estimate 또는 KAEG-P (INTL), AS 2501 | Identify which assumptions are relevant to an accounting estimate을 참조한다. [↑](#footnote-ref-2)